2-1. 학칙

제정 2005. 3. 1
개정 2005. 9. 1
개정 2006. 1. 11
개정 2006. 2. 21
개정 2009. 8. 31
개정 2009. 11. 9
개정 2013. 3. 1
개정 2014. 3. 1
개정 2015. 3. 1
개정 2015. 8. 1
개정 2018. 4. 9
개정 2018. 7. 10
개정 2018. 10. 23
개정 2018. 12. 18
개정 2019. 6. 25
개정 2020. 6. 23
개정 2020. 8. 1
개정 2020. 10. 13
개정 2021. 9. 28
개정 2021. 12. 14
개정 2022. 2. 15
개정 2022. 5.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경안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대한민국 교육의 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와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목회자와 교육자 양성 및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1.)

제2조(조직) 본교는 학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총장과 그 하부조직으로 사무처, 교무처, 기획처, 학생처, 산학협력단 등과 사무를 관장할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3.1.)(개정 2022.02.15.)

제3조(학위과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교에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

하 “석사학위 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을 둔다.(개정 2018.4.9.)

제4조(정원) 본교의 학생 입학정원은 석사과정 총50명으로 하며 신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음악학과 정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7.10.)(개정 2020.10.13.)

제2장 입 학

제5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출석 수업일수 1/4 이내로 한다.(개정 2021.9.28.)

제6조(입학자격) 본교의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외국인 학생) ①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준용한다.

제8조(입학전형방법) 입학전형은 필답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하여 필답고사 성적순으로 대학원위원회에서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시험만으로 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6.23.)

제9조(입학지원 서류) 본교 석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기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
2. 대학 성적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10조(편입학) 본교의 석사과정에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정원 중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본교 또는 타 대학원의 석사과정(M.Div.과정은 제외)에 재학했던 학생(개정 2020.6.23.)
2. 관할청 령이 정하는 위탁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11조(재입학) ①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 할 때에는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당해연도 입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군 복무기간은 위 3년의 기간에서 예외로 한다.(개정 2013.3.1.)

②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개정 2013.3.1.)

③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선발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적 및 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⑤ 재입학 허가 시 학기 인정은 제적 당시의 학기 이하로 한다.

제3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12조(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 또는 재학생은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납입금 납부로서 완료된다.

제13조(수강신청)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매 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의 1(전공 변경)(신설 2022.05.23.)
① 동일 학과 내에서 학과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 변경 신청서(별지 서식 1-4)
2. 성적증명서
③ 전공 변경자의 변경 전 취득학점은 변경 후 전공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4장 수업년한·재학년한·수업일수·교과과정·학점·성적 및 수료

제14조(수업연한) ① 본교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년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② 학칙 제19조에 정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서는 수업연한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③ 편입생은 학칙 제20조 2항의 학점을 인정받을 경우 수업연한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재학년한) 재학년한은 수업년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총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삽입되지 아니한다.(개정 2013.3.1.)

제16조(수업일수 및 수업)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단축 운영할 수 있다.

② 매 학년은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하며, 학기는 3월부터 8월과 9월부터 익년 2월까지 2학기를 기본으로 하되, 방학기간 중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정기휴업일은 법정 공휴일과 개교기념일로 하며 하계휴가, 동계휴가, 임시휴업일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6.23.)
④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학기 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9.11.9.)(개정 2021.12.14.)
⑤ 법령에서 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1.12.14.)

제17조(교과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과 초빙교원 등이 담당할 특수한 교과목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6.25.)

제18조(이수단위) 교과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한 학기동안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19조(이수학점) 본교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이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은 총24학점 이상으로 하고, 논문 선택자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은 총30학점(학위논문 6학점 포함)이상으로 한다. 다만 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위논문 학점 취득 요건을 면제하되 논문대신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2. 음악학전공 이수자의 학위청구논문은 총장이 따로 정한 졸업연주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3. 선수과목의 학점취득은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학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4. 본교 학생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신설 2020.6.23.)

제20조(타 대학원 학점 인정) ① 전공과목으로 그 이수를 위하여 사전에 기초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 교과과정에 이를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본교에서 인정한 국내·외 정규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 편입하였을 때는 9학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3.3.1.)

제21조(과정의 수료) ①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수료는 재학년한 동안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인정한다.

제22조(시험) ① 시험은 각 교과목별로 정기로 기말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추가 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업일수 4분의 1을 결석한 학생은 해당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23조(성적의 평가) 학업 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A+	97-100	4.3
A0	94-96	4.0
A-	**90-93**	**3.7**
B+	87-89	3.3
B0	84-86	3.0
B-	**80-83**	**2.7**
C+	77-79	2.3
C0	74-76	2.0
C-	**70-73**	**1.7**
D+	67-69	1.3
D0	64-66	1.0
D-	60-63	0.7
F	59이하	0
P	합격	불계

제24조(이수학점인정) 학점은 D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취득학점의 평균 평점은 이 학칙 제26조에 따른다.

제25조(수료증서수여) 본교에서 규정된 학기 이상을 수학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종합시험 및 신학과는 성경 종합 고사, 그 외 학과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게는 석사과정 수료를 인정하고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수료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5장 학위 수여

제26조(학위취득자격) 석사과정의 학위 취득을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지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이수학점의 평균 평점

가. 신학과: 학칙 제19조 1항에 규정된 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취득학점의 평균 평점이 3.0(B0) 이상인 자

나. 사회복지상담학과: 학칙 제19조 1항에 규정된 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취득학점의 평균 평점이 3.0(B0) 이상인 자(개정 2018.7.10.)(개정 2020.10.13.)

다. 음악학과: 학칙 제 19조 2항에 규정된 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취득학점의 평균 평점이 3.0(B0) 이상인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신학과는 성경종합고사, 그 외 학과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제27조(학위 수여 및 취소) ① 제2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학위논문심사에 합격 또는 학위취득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지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학위 종별)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
1. 신학과: 신학석사
2. 사회복지상담학과: 사회복지학 석사(개정 2018.7.10.)(개정 2020.10.13.)
3. 음악학과: 음악학 석사

제6장 휴학·복학·제적·퇴학

제29조(휴학) ①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 부모학생의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과 여학생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 요청 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09.8.31.)(개정 2013.3.1.)(개정 2018.12.18.)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할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등록기간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그 학기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고 등록기간 경과 후에는 등록을 필한 후에 휴학할 수 있다.
④ <삭제>(개정 2013.3.1.)

제30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로서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에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의 경우에도 수학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복학을 유예시킬 수 있다.

제31조(제적)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개정 2020.10.13)
2. 매 학기 등록금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재학년한을 초과한자
4. 무계출 결석이 30일을 초과한 자

제32조(퇴학)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이유를 써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공개강좌·연구생

제33조(공개강좌) ① 본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이수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 상 필요한 학식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공개강좌의 개강)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과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35조(연구생 자격 및 입학) ①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연구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구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의 입학허가는 매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연구생이 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연구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6조(연구생 수강) 연구생은 총장으로부터 승인된 과목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고, 등록 절차와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연구실적 증명서) 연구생으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1-2)에 의한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장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제38조(지도교수) 학생의 과정이수 및 학위논문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제39조(교원의 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9장 학생지원 및 진로지도

제40조(학생자치기구) ① 학생들이 창의적인 자치능력으로 지도력 배양을 위하여 학생자치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다양한 활동과 학술 및 종교간 교류·협력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자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②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은 학생처에서 담당한다.(개정 2020.6.23.)

제40조의 2(장애학생의 지원) 장애학생이 학내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5.8.1.).

제41조(학생진로지도)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애로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상담제도와 학년 지도 교수제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6.23.)

제10장 종합시험

제42조(응시자격) ① 다음의 각 호의 1의 요건을 갖춘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평균 평점이 3.0(B) 이상인 자
3.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 응시할 수 있다.

제43조(종합시험 시기) 종합시험의 시행 시기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44조(시험과목) 시험은 전공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합격기준)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11장 학위논문

제46조(논문계획서)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학위논문을 제출하기를 원하는 자는 학위논문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개정 2020.6.23.)

제47조(논문 제출 및 심사) ① 종합시험에 합격한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서와 소정의 심사료를 첨부하여 심사용 논문을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받아야 하며, 학위논문 작성 요령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출된 학위 논문은 총장이 위촉한 심사위원이 이를 심사하며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제48조(학위취득자격시험) ① 제26조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자는 학위취득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학위취득자격시험은 매학기 공고한 기간에 실시하며, 응시지원 시 지정된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위취득자격시험의 시행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9조(합격기준) ①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논문심사와 논문 제출자에

대한 구술시험을 거쳐 논문 합격여부를 의결한다. 논문심사의 의결은 심사위원 3인중 2인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12장 장학금 및 연구비

제50조(장학금 및 연구비 보조) 본교의 대학원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1조(장학금 신청)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기간 내에 지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2조(수혜대상자 선정) ① 장학생의 선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그 선정기준을 정하여 결정한다.
② 장학금 및 연구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13장 대학원위원회

제53조(대학원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및 도서관장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의장이 된다.(개정 2020.6.23.)

제54조(심의, 결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학칙,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발의
2.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장학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학과 간의 업무 협조 및 조정
6. 기타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5조(소집 및 의결) ① 대학원위원회는 총장 또는 전체교수 1/2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휴직 또는 연구년 기간 중인 교원은 재적 교원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56조(회의록) 대학원위원회에 서기를 두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4장 보 칙

제57조(학칙개정) ① 이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1항에 의한 절차를 거쳐 대학원위원회 2/3이상의 결의를 얻어 개정한다.
② 개정된 학칙은 개정 즉시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8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 (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09.11.9)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11.9.)

제60조(도서관) ① 본교에 도서관을 두며,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설, 직원, 자료 등을 갖추도록 한다.(신설 2018.10.23.)
② 도서관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8.10.23.)
1.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 칙

①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내용 변경.

부 칙

①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정원), 제14조(수업연한), 제16조(수업일수 및 수업), 제18조(이수단위), 제19조(이수학점), 제20조(타 대학원 학점 인정), 제26조(학위취득자격), 제39조(교원의 교수시간) 내용 변경.

부 칙

①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정원), 제26조(학위취득자격), 제28조(학위 종별) 내용의 변경.

부 칙

①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정원), 제26조(학위취득자격), 제28조(학위 종별), 제29조(휴학) 내용의 변경.

부 칙

①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6조(수업일수 및 수업)4항 야간수업 실시 추가.
③ 제49조 자체평가에 관한 내용 신설.

부 칙

①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조직), 제11조(재입학), 제15조(재학년한), 제20조(타 대학원 학점 인정), 제29조(휴학) 내용 변경.

부 칙

①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를 교수회로 명칭 변경.

부 칙

①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제8조, 제17조, 제27조, 제34조, 제43조, 제52조, 제13장 제목,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의 교수회를 대학원위원회로 명칭 변경
③ 제27조 2항 학위 취소에 관한 내용 추가.

부 칙

①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9장 제목 수정 및 제40조의 2항(장애학생의 지원)신설.

부 칙

①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 박사학위 과정 신설.

부 칙

①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제26조, 제28조 사회복지학과 학과명을 사회복지상담커뮤니티정책학과로 변경, 별지서식 1-1-1, 1-2-1 추가.

부 칙

①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60조 도서관 신설.

부 칙

①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9조 부모학생 자녀양육 및 여학생 임신·출산 휴학 사유 추가.

부 칙

①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7조 초빙교원 등이 담당할 특수한 교과목 관련 조항 추가.

부 칙

①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8조, 제10조, 제16조, 제19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제53조의 자구 수정 및 추가.

부 칙

①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 및 별지 서식 내 자구 수정.

부 칙(2020.10.13.)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제26조 1호의 나, 제28조 2호, 제31조 1호의 자구 수정.
③ (경과조치) 학과명 변경 전에 커뮤니티정책학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변경 전의 학과명인 사회복지상담커뮤니티정책학과로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2021.09.28.)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5조 자구 수정.

부 칙(2021.12.14.)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6조 4항 자구 수정 및 제16조 5항 신설.

부 칙(2022.2.15.)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 자구 수정.

부 칙(2022.5.23.)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3조의 1 신설.

【별지서식 1-1】
(논문선택자)

석 제 호

학 위 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 ○○○ 학과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위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논문:

20 년 월 일

경안대학원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직인

학위번호

【별지서식 1-1-1】
(논문선택자)

석 제 호

학 위 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 ○○○ 학과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위 인정에 의하여 ○○○학(000전공)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논문:

20 년 월 일

경안대학원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직인

학위번호

【별지서식 1-2】
(학위취득자격시험)

석 제 호

학 위 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 ○○○ 학과를 이수하고 ○○○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위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경안대학원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직인

학위번호

【별지서식 1-2-1】
(학위취득자격시험)

석 제 호

학 위 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 ○○○ 학과를 이수하고 ○○○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위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000전공)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경안대학원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직인

학위번호

【별지서식 1-3】

석 제　　호

연 구 실 적 증 명 서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원 대학교　　학위 과정에서　　년　　월간

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경안대학원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별지 서식 1-4] 전공 변경 신청서(2022.05.23.)

전공 변경 신청서	결재	담당	학과주임교수	교무처장	총장

현 소 속	학과	전공	
학 번		성 명	
변 경 소 속	학과	전공	

학점취득 현황

학 기	취득학점	평점평균	이수 교과목명
제1학기			

학점인정 내역(학과주임교수 작성)

학기	취득학점	평점평균	이수 교과목명
제1학기			

위와 같이 전공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성적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

학과주임교수 : ㊞

경안대학원대학교총장 귀하